

대구지방법원 2022. 3. 3 선고 2021가단1437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3. 3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의 2019. 4. 16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김성열

별지